

### 제1장 보험계약법 총론

#### 1. 보험의 의의

- (1) 보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하나의 추상적 공동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금을 미리 각출하고 일정한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꾀하려는 경제·사회적 제도이다.
- (2) 상법 보험편 제638조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여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대해 일원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 2.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 (1) 보험의 순기능

##### 1) 경제적 안정

보험제도는 불확정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보험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이나 기업은 가계생활 및 기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적 기능도 담당한다.

##### 2) 자본의 형성과 공급

보험자는 위험단체 구성원으로부터 보험료를 계속 받아 자금을 형성하고 이를 다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여 축적된 자본을 금융시장에 공급하는 산업자본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산업경제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 3) 신용수단

보험제도는 개인의 대출이나 해외무역 등에 있어 신용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 4) 위험의 국제적 분산

보험자가 인수하려고 하는 위험이 매우 큰 경우에 재보험 등을 통해 국내 보험시장을 넘어 국제적으로 그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서 거대 위험의 인수를 가능하게 한다.

##### 5) 손해방지 기능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을 위해 보험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고예방에 대한 정보를 자신들의 고객들과 사회 전체에 홍보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사고방지를 위한 연구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한다.

### (2) 보험의 역기능

보험계약이 가지는 사행계약적 성격으로 인해 처음부터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것과 같은 보험범죄의 문제 및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보험계약자들이 오히려 보험을 선호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제도가 가지는 역기능에 대한 대책으로써 보험감독당국과 수사기관 그리고 사법기관 등에 의해 보험범죄의 예방 및 적발 그리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적 제재가 요구된다.

### 3.보험의 원리

#### (1) 대수의 법칙

개개인에게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사고를 동일한 위험에 대한 위험단체 내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관찰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의 특정사고의 발생률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 한다.

#### (2) 수지균등의 법칙

보험료나 보험금은 과거의 위험발생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수의 법칙에 의해 위험률을 산정하여 계산된다. 대수의 법칙에 의해 계산된 사고발생 확률을 기초로 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에 지급되는 보험금총액과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험단체 운영자가 단체의 구성원들로부터 미리 각출해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수지균등의 원칙이라 한다.

#### (3) 위험의 동질성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여기에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체구성원들의 위험이 동질적이어야 한다. 보험의 핵심적 요소인 대수의 법칙은 위험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다. 위험의 동질성을 통해 위험단체가 구성되고 이 안에서 위험이 전가되며 분산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1차시 | 보험계약법 총론

### (4) 위험분산의 원칙

위험의 인수한도와 집중적인 보험계약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수위험을 지역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분산해야 한다.

### (5) 신의성실의 원칙

사행계약에서 오는 원칙으로 쌍방 간의 권리 · 의무 행사 시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배한다.

### (6)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

보험계약의 단체에서 비추어 보험자는 계약상의 전제조건이 동일한 보험계약자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 4.보험의 유사제도와 구별

#### (1) 저축

- 1) 경제생활의 불안정에 대비한다는 목적은 공통되지만, 저축은 반드시 위험을 특정하여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위험단체를 구성하거나 대수의 법칙에 따른 사고발생률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이 결정에 의해 개인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서 이를 개인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과 구별된다.
- 2) 보험의 경우 보험자단체의 구성을 전제로 하며 보험기간 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생명보험 등 저축적 성격을 가진 보험을 제외하고는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이 점이 저축과 다른 점이다.

#### (2) 공제

- 1) 공제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2)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이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가입대상을 제한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르다.

### (3) 자가보험

자가보험이란 경제주체 스스로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사후에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가보험은 대수의 법칙에 의한 손해발생의 개연율을 기초로 하여 적립하는 점에서 단순한 저축과 다르고 위험단체가 없다는 점에서 보험과 다르다.

### (4) 도박 · 복권

1) 도박이나 복권은 승부의 결정 또는 당첨 등의 우발적 사건에 의해 금전이나 기타의 재물이 지급 되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한 면이 있다. 특히 복권의 경우에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과학적이고 치밀한 확률적 계산을 기초로 하여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도 한다.

2) 그러나 도박이나 복권은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위험단체의 개념이 없다. 보험이 가능하면 회피하고 싶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 손실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취지인데 비해, 도박이나 복권은 그 사고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그 우연한 사고에 의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점에서 구별된다.

### (5) 보증

보증이란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일종의 채권담보제도이다. 보증은 보증인과 피보증인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다수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합리적 위험분산을 도모하는 보험과는 구별된다.

### 5.보험의 분류

#### (1) 상법상의 분류

##### 1) 손해보험

-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손해보험이라 한다.
- ② 상법 보험편은 손해보험의 종류로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보험, 보증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 2) 인보험

인보험이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액 또는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이 있다.

#### (3) 보험금지급방법에 따른 분류

##### 1) 부정액보험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약정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는 보험이다.

##### 2) 정액보험

보험가입자의 재산에 생긴 손해와는 상관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 1차시 | 보험계약법 총론

### (4) 원보험과 재보험

- 1) 보험자가 자신이 1차적으로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2차적으로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원래의 보험을 원보험이라 하고, 다른 보험자가 인수한 제2의 보험을 재보험이라 한다.
- 2) 원보험과 재보험은 법률적으로 각각 독립된 보험계약이며 원보험의 성질이 무엇이든 간에 재보험은 항상 원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를 담보하게 되므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손해보험이며 기업보험이다.

### (5) 공보험과 사보험

#### 1) 공보험

공보험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경제적인 입장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 또는 경제정책 수행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을 말한다.

#### 2) 사보험

영리를 목적으로 사적주체가 사기업의 형태로 사경제적 목적으로 경영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국내외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각종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이 전형적인 예이다.